

구 보

◆ 차 례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5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5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5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5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5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5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 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49호:
방배동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사항)인가 고시

공 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2436호:

방배동 97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2475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단계별 행정조치 사전통지(반포동 734-24) 공시송달 공고

<이면없음>

공 람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 초 구

※ 이 구보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seocho.go.kr>-열린구청-행정정보-서초전자구보)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전 성 수 인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1516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제28조”를 “「평생교육법」”으로, “여가·문화생활 등의”를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계선지능인지원”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달하는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달하는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원”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지원”을 각각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센터”를 “평생교육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선별 및 지원”을 “발굴·선별 및 정서발달지원,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진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인식개선”을 “평생교육 인식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6호) 및 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지원”을 각각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3.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

4.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5. 경계선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조제1항 중 “지원에”를 “평생교육에”로 한다.

제9조 중 “지원”을 “평생교육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초·중등교육법</u>」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u>여가·문화생활</u>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경계선지능인</u>”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u>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9세 미만의 자</u>를 말한다. 2. “<u>경계선지능인 지원</u>”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	<u>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 「<u>평생교육법</u>」----- ----- ----- <u>직업생활</u>, <u>여가·문화생활</u>에 <u>필요한 평생교육</u> ----- ----- ----- -. 제2조(정의) ----- -----. 1. “<u>경계선지능인</u>”이란 「<u>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달하는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u>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u>을 말한다. 2. “<u>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u>” -----

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평생교육 지원-----.

② ----- 행정적·재정적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평생교육 지원-----.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 평생교육 지원 -----.

② -----.

1. ----- 평생교육-----

항

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생략)

제6조(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교육 프로그램

2. ----- 평생교육 지원 -----
3. ----- 평생교육 -----
4. ----- 평생교육 지원 -----
5. ----- 평생교육 지원 -----
6. ----- 평생교육 지원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 ① -----
----- 평생교육 지원센터 -----
- ② -----

1. ----- 발굴·선별 및 정서발달지원, 평생교육 -----
2. ----- 평생교육 -----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신 설>

<신 설>

<신 설>

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

3.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

4.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5. 경계선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7. ----- 평생교육 진흥-----

8. ----- 평생교육 인식개선 -----

9. ----- 평생교육 지원 -----

10. ----- 평생교육 지원-----

제7조(위탁 등) ① -----

---- 평생교육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동사업 추진) -----
----- 평생교육 지원-----

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전 성 수 인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1517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맞은바”를 “맞은 바”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무단 이탈”을 “무단이탈”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근무하는자는”을 “근무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
4. 30년 이상 재직자: 25일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u>맡은바</u>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 ----- ----- <u>맡은 바</u> ----- -----.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u>자</u>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비밀엄수) ----- ----- <u>사람은</u>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친절·공정) ① (생 략)	제6조(친절·공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직무를 <u>수행함에 있어서</u>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u>수행할 때</u> ----- -----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②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u>무단 이탈</u>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u>무단이탈</u>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제9조(겸임근무) ① -----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자는 복
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
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
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생략)

제10조(파견근무) ① (생략)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
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
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
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
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
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
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
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근무하는 사람은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

사람이 -----

-----.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
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
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
항-----

-----.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소속 공무원-----

-----.

제14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④ (생 략)

⑤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
4. 30년 이상 재직자: 25일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

<신 설>

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 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전 성 수 인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1518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 ②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원의 정당한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으로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제3조제4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센터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2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전 성 수 인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1519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고객의 편의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전 성 수 인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1520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구에 소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3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신혼부부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가구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2. 청년 지원금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공고일 기준 연 1회 최대 100만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였을 것
3.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원 이하일 것
4.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②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일 것
2.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 것
3.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을 두고,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일 것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에 해당하는 사람
5. 전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

출 제외)

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지원 등 유사한 지원사업의 수혜자
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9.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이 환수조치된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신혼부부 또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4.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즉시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8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전 성 수 인

202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1521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

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다. 폭염 노출 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등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예측 및 기상전망
4.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
5.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6.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방안
7.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재난·복지·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폭염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그늘막·쿨링포그·쿨링의자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운영
 2. 도로 살수차, 하천·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49호

방배동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사항)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번지 외 3필지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사항)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사항)인가 처리하고,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번지 외 3필지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4,978.29㎡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승휘)
6.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상가동 1층 109호(방배동, 방배 래미안타워)
7.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8.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3. 10. 27.
9.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 정비사업비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
- 측량 결과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면적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도로 2㎡) 반영
- 부대시설 실명 변경 및 외장재료 변경 등

10.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m)	용 도	층 수
4,978.29	39.11	150.01	12,341.94	17.78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 근린생활시설 및 노유자시설	지하2층 ~ 지상6층

11.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급구분	주택의 형태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기준)		
			60㎡이하	60~85㎡미만	85㎡이상
계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	90	5	85	-
분 양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	90	5	85	-
임 대		-	-	-	-

12.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	도로	2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공사완료 후 무상귀속

13. 의제 처리사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

14.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02-2155-736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